■ [별지 제1호서식]

일련번호 : 제2021 - 16호

검 사 명 령 서

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	대상 제품 : 치즈류	
	대상 국가 : 이탈리아	
	대상 해외제조업소 : EMILIO MAURI S.P.A(CE IT 03 48) (검사명령 기간 중 해당 제조업소명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제조업소도 해당)	
영업자	영업의 종류	
	영업소 명칭	
	소재지	
사유 : 수입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식품등에 해당		
기간 : 2021. 12. 24. ~ 2022. 12. 23.		
검사항목 :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* 기준 :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		
시험법 :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상의 시험법을 따름		
기타 : 「식품·의약품 분야 시험·검사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·검사기관(다만,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업무범위를 수입검사로 지정받은 기관에 한함) 또는 같은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·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매 수입 시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* 검체채취는 시험·검사기관 직원이 입회하여 실시		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명령합니다.

2021 년 11 월 30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유의사항

1.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하려는 자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시험·검사성적서(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)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수입신고 할 수 없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